



전미주 한인장애인체육대회 규정

(2019.11.23)

전미주 한인장애인체육대회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

제 2 조 명칭 및 개최근거

본대회는 전미주장애인체육대회(이하 장애인미주체전 이라 칭하고)라고 하며 재미대한장애인 체육회(이하 본회라 칭하고)가 매 2 년 마다 짝수년도에 미국내에서 개최한다.

제 3 조 미주체전에 대한 본회의 권리

본회는 미주체전의 조직 및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 대회명칭, 대회상징마크, 표어 등 대회상징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본회가 가진다.

제 4 조 대회횟수 및 개최시기

미주체전은 2020 년 6 월 19 일·20 일(양일간)캔사스주 Johnson County 를 제 1 회 대회개최지로 하고 매 2 년마다 학기방학기간인 6,7 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조 경기행사 제한

미주체전 개최일 2 주전부터 종료일까지 본회지회 및 경기단체는 어느 체육행사라도 개최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항의 경우에는 본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제 6 조 본회의 역할

- 1 항, 본회는 미주체전의 주최가 된다.
- 2 항, 본회의 회장이 미주체전의 대회장이 된다.
- 3 항, 본회의 전반적인 지휘 감독하에 체전조직위원회와 공조한다.
 - 가) 미주체전 참가신청서 배부 및 접수하며 접수된 참가신청서는 체전조직위원회와 공유한다.
 - 나) 대한장애인체육회를 비롯한 한국정부기관과의 대회준비사항을 책임진다.
 - 다) 개최지를 제외한 재외공관 협조관계를 추진한다.

- 라) 재미한인대표단체에 협력을 추진한다.
- 마) 체전본부위원회를 두어 체전에 관한 본부의 역할을 전담한다.
- 바) 본부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책임진다.
 1. 체전홍보물 제작과 배부
 2. 체전에 필요한 모든 깃발을 준비
 - 기수용 성조기, 태극기
 - 대회기, 재미대한장애인체육회기, 대한장애인체육회기
 - 각지회기, 경기단체기
 - 기타 체전에 필요한 깃발

제 7 조 체전 조직위원회의 역할

- 1 항, 본회의 주관이 된다.
- 2 항, 조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책임진다.
 - 가) 체전 개막식 책자 제작
 - 나) 체전기간중 필요한 모든 수송을 제공한다.
 - 다) 숙소 및 식당등 숙식에 대한 정보를 각 선수단에 최대한 제공한다.
 - 라) 체전에 필요한 경기장 및 행사장을 조직위원회 예산으로 제공한다.
 - 마) 경기중에 필요한 식사와 음료수를 제공한다.
 - 바) 기타 필요한 편의 제공을 책임진다.
 - 사) 경기에 필요한 장비들을 경기단체가 협의하여 준비하도록 한다.

제 8 조 참가지회(지역체육회)

- 1 항, 대회에 참가하는 각 지회는 지역대표팀 인솔을 책임진다.
- 2 항, 지회에서 구성된 참가선수단의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책임을 진다.
- 3 항, 각 지회에서 선수단들에게 안전교육, 경기중의 법칙등 철저히 교육하여 불상사가 발생치않도록 최대한 대비를 한다.

제 9 조 중앙경기단체

- 1 항, 각 종목별 경기단체는 해당 경기종목의 주최가 된다.
- 2 항, 각 종목별 경기단체는 개최지 해당종목 지역경기단체의 경기운영을 지휘,감독한다.
- 3 항, 각 종목별 경기단체는 다음과 같은 원활한 대회준비, 운영을 위하여 조치한다.
 - 가) 단체경기종목의 경기규칙을 미주체전 참가요강에 준하여 제정 본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나) 사전 개최지 경기장 및 심판과 경기진행요원등을 개최지 해당종목 지역경기단체와 공조하여 경기준비를 철저히 한다.
- 다) 종목별 대표자 회의 및 대진 추첨을 관장하며 체전본부에 즉각 보고한다.
- 라) 경기장에서 각 지역 경기단체를 지휘, 통솔하여 질서를 유지한다.
- 마) 경기 결과를 총괄집계하여종합상황실(본부)에 즉각 보고한다.

제 10 조 개최지 지역경기단체

- 1 항, 개최지 지역 경기단체는 본대회해당종목의 주관이 된다.
- 2 항, 종목별 중앙경기단체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당종목경기를 총괄하지 못 할 경우, 개최지 경기단체가 경기운영에 모든 것을 관장하여 제 9 조사항을 대신한다.
- 3 항, 각 종목별 개최지 지역경기 단체는 원활한 대회준비,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가) 사전 개최지 경기장 및 심판과 경기진행요원등을 중앙경기단체와 공조하여 경기준비를 철저히 한다.
 - 나) 종목별 대표자 회의 대진추첨을 중앙경기단체와 사전협의하여 장소 및 회의진행과 대진표 작성준비등 기타 모든 준비를 한다.
 - 다) 경기장을 점검하여 경기진행에 만전을 가한다.
 - 라) 경기결과 총괄집계를 중앙경기단체를 도와 공조한다.
 - 마) 기타 제반사항을 조직위원회에 적극협조한다.

제 11 조 대회준비회의

- 1 항, 대회준비회의는 대회 당해년도 본회 정기 대의원 총회때 같이 한다.
- 2 항, 본회 정관 ()에 의거 대회 당해년도 총회를 체전 개최지에서 유치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가) 총회를 유치한 지역체육회는 다음 각항을 제공한다.
 - 1. 대의원 수송
 - 2. 회의장소
 - 3. 회의참석인 및 참관인 식사제공
- 3 항, 대회준비회의는 총회 직후에 한다.
- 4 항, 회의 의제는 조직위원장이 선정하며 본회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 5 항, 조직위는 본 회의때에 운동장, 숙소, 식당 등 대회 전반적인 사항을 확정하여 회의참석때 계약서 등을 참석자들에게 배포한다.

제 2 장 체전본부위원회

제 12 조 설치근거

본회정관 제()장 제()항에 의거 전미주 한인장애인체육대회 본부위원회 (이하“체전본부위원회”로 칭함)를 둔다.

제 13 조 설치목적

대회의 전반적인 것을 전담하며 본회 지휘감독하에 대회준비 및 운영에 일관성을 확고히 하고 독자성을 찾고 업무를 추진하여 대회발전에 그 목적을 둔다.

제 14 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교무를 추진한다.

- 1 항, 미주체전 준비에 관한 사항
- 2 항, 미주체전 관한 전반적인 사항
- 3 항, 미주체전의 비영리단체운영에 적법적인 회계를 총괄하며 대회 기금조성에 연속성을 갖는다.
- 4 항, 미주체전 대회참가 신청서를 접수한다.
- 5 항, 대회 참가요강을 제작, 배부한다.
- 6 항, 미주체전에 관한 전반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본회에 보관, 관리한다.
- 7 항, 조직 위원회가 사용하고자 하는 각종 사안에 관한 승인
- 8 항, 기타 미주체전에 관련된 전반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본회에 보관, 관리한다.

제 15 조 선출 및 임기

1 항, 위원회는 위원장 1 인, 부위원장 3 인과 위원들을 포함하여 5 인에서 10 인 이내로 구성한다.

가) 위원장은 수석부회장이 맡은 경우를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회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동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나) 다른 부위원장 3 인은 선출된 위원장이 본회회장과 상의하여 임명하도록하며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본회회장이 임명한다.

라) 중앙경기단체장 1 인이상을 위원으로 두어야 한다.

마) 위원회 설치는 미주체전개최일 1 년이내에 설치되어야 하며 개최후 사업이 종료될때 본회회장이 해체일을 결정한다.

바) 조직위원장은 부위원장에 자동적으로 임명된다.

제 16 조 운영

1 항, 체전본부위원회는 별도로 내규를 두어 시행한다.

2 항,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된다.

가) 위원장은 체전본부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서면결의 형식이나 무선소통방식을 사용할수도 있으나 다음 위원회에서 소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의 결정된다. 가부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 3 장 개최지선정

제 17 조 미주체전 개최를 희망하는 지회는 다음과 같이 개최지를 신청한다.

1 항, 미주체전 개최지 신청을 매 짝수년도 본회 정기 대의원 총회 2 주전까지 차기대회(2 년후) 또는 차차기(4 년후) 신청을 통해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개최지를 결정한다.

2 항, 개최지 신청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대회에 대한 일정계획서

나) 경기종목 및 운영조직계획서

다) 체육대회 외에 기타 행사계획서

라) 지역한인단체의 동의서 및 대회 협조계획서

마) 대회예산 계획서(예상수입,예상지출 포함)

바) 개최지 및 한인사회 소개서

사) 대회개최 당위서

아) 행사운영계획서

자) 개최에 관한 서약서

3 항, 기타본회에서 요구하는 계획서를 제출한다.

제 18 조 개최지 심의 및 결정

1 항, 개최지 심의를 재미대한장애인 체육회장이 체전심위 위원회를 임명하고 심의위원장과 3 명의 심의위원을 둘 수 있다.

2 항, 본회가 정관제()조에 의거개최지 신청서를 접수하면 아래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심의하여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회를 우선 고려하고 예비심사를 하며 당해년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결정승인하나 신청지가 2 개지회 이상일 경우 투표로서 결정한다.

가) 가맹경기단체가 지회내에서 활동상황과 본부에 총회보고한 기록과

중앙경기단체가 협조등으로판단하며 종목별 경기운영능력을 우선으로 한다.

나) 자체운영자금과 대회경비충당이 가능한지를 점검한다.

다) 심의의 기준은 제출된 신청서류에 의거한다.

라) 심의위원장은 심의결과를 개최지결정 대의원총회때 보고하도록 한다.

3 항, 체전 개최 4 년전인 체전이 있는 당해년도 정기이사회 총회에 차차기 개최지를 결정한다.

4 항, 개최지 신청지회는 총회에서 10 분이내의 소견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진다.

5 항, 표결은 비밀투표로 하며 과반수의 관계없이 최당 득표지회로 한다.

6 항, 다수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득표지가 결정할때까지 재투표를 실시한다.

7 항, 미주체전 개최지로 결정된 지회는 본회의 승인조건과 미주체전에 관한 제반규정을 준수한다.

제 19 조 대회 준비사항 보고

미주체전 개최지회는 미주체전에 관한 모든 준비사항을 미주체전 당해년도 정기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함은 물론 총회 1 개월전까지 본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한다.

제 20 조 대회개최지 반납 대회무산특례

1 항, 대회개최지가 대회를 반납 또는 대회무산 위기가 있을 때는 본대회 결정 차점 득표순서 지역으로 우선하되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의 동의를 있어야 한다.

2 항, 체전 개최지지회 당해년도에 자의적으로 총회를 유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대회 무산 위기로 본다.

3 항, 총회를 유치하였어도 개최지의 현지사항을 파악하고 당총회에서 대회지역변경을 결정할 수 있다.

제 4 장 조직위원회

제 21 조 설치

미주체전 개최지로 결정된 지회는 개최 전회인(작수)에 전미주 한인 장애인 체육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 22 조 구성시기

조직위원회는 미주체전 개최전년도 본회 정기이사회 및 총회전까지 조직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총회에 공식적으로 발표한다.

제 23 조 임원

조직위원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직위원장 1 인
2. 총괄본부장 1 인
3. 조직부위원장 1 인이상
4. 본부장 1 인이상
5. 분과위원장 다수인

제 24 조 임원의 선출

1 항, 전미주한인장애인체전 조직위원장은 개최지 지회장이 된다. 그러니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회장의 추천으로 지역에서 능력있는 인사로지역체육회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되었을때 본부에서는 조직위원장으로 임명한다. 단 임명된 조직위원장은 재미대한장애인체육회 체전규정을 성실히 준수해야한다.

2 항, 부위원장은 현지 한인단체장 및 미주류사회의 인사를 임명하여 대회때 적극 동참시키도록 한다.

3 항, 조직위원장은 조직위원회 내의 임원들의 임명권을 갖는다.

제 25 조 총괄본부위원회

조직위원회는 실질적인 대회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개최지역 한인단체인사를 포함하여 조직위원회를 구성한다.

1 항, 총괄본부장은 부조직위원장 중에서 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역한인단체장을 임명할 수도 있다.

2 항, 총괄본부위원회 본부장 및 분과위원장은 조직위원장이 임명한다.

3 항, 총괄본부위원회 회의소집은 총괄본부장이 필요시에 따라 소집한다.

4 항, 분과위원회는 개최지의 실정에 맞게 조직하며 다음과 같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1. 대회행정위원회
2. 경기단체운영위원회

3. 경기장 및 시설운영위원회
4. 수송 및 숙소운영 위원회
5. 식사 및 식수관리 운영위원회
6. 개회식, 폐회식 운영위원회
7. 자원봉사자 운영위원회
8. 홍보 및 기금조성 위원회
9. 의전 및 행사안내위원회
10. 안전 및 대회질서 관리위원회
11. 기타행사운영 관리위원회
12. 의료봉사특별위원회

5 항, 각 위원회는 위원장 개인 및 주무 1 인등 필요한 수의 위원을 두도록 한다.

6 항, 경기단체 운영위원회는 각 종목별 담당자를 임명하여 중앙경기단체 경기진행 및 준비를 사전조율 승인을 받는다.

7 항, 본 위원회는 미주체전 사업종료시까지 함께한다.

제 5 장 참가신청 및 참가요강

제 26 조 참가신청

- 1 항, 본회에서 공인된 지회(카운티 주)에게 참가자격이 주어진다.
- 2 항, 지회장 명의로 인한 참가신청만이 유효하다.
- 3 항, 지회에서 대표로 선별된 단체는 참가요강에 의거 지회장이 참가신청을 한다.
- 4 항, 지회가 없는 주 혹은 카운티에 출전하는 선수단이 참가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본부체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만 신청할 수 있다.

제 27 조 대회참가자격

장애인미주체전의 출전자격은 본회에 정식으로 가입승인된 지회로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참가자격이 주어지고 각기 출전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항, 미주체전은 본회의 각 지회가 참가신청한 개인 및 단체가 참가한다.
- 2 항, 선수는 각 중앙경기단체 선수등록규정 및 대회참가요강에 적용을 받는다.
- 3 항, 참가자격은 한민족 혈통은 누구든 참가할 수 있다. 타민족의 경우 참가할 수 있으며 대회규정에 의거 타민족 참가자 수가 전체의 1/3 을 초과하지 못한다.

4 항, 비장애인의 경우 참가요강에서 제시하는 허용종목에 따라 참가할 수 있으며 전체 참가자수의 1/3 을 초과하지 못한다.

5 항, 한민족 혈통은 12.5%(1/8)이상 혈통을 말한다.

6 항, 본회의 지회를 통한 참가신청자만이 출전할 수 있다.

제 28 조 참가인원보고

참가신청을 한 지회는 미주체전 최종 참가신청을 5 월 15 일까지 반드시 해야한다.

제 29 조 참가비결정 및 납부

1 항, 참가지회는 최종 참가확정인원 보고때 조직위원회에 참가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2 항, 참가비는 대회때마다 체전본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30 조 참가요강

1 항, 미주체전의 일반사항 참가자격, 경기종목별 참가는 본회가 정하는 규정에 의거한다.

2 항, 미주체전 참가요강은 미주체전 본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실에 맞게 결정하며 대회개최년도 본회정기총회에서 배포한다.

제 33 조 대회홍보물 제작 및 배포

홍보물은 조직위원회에서 제작하며 각지회를 통하여 미주전지역에 알릴 수 있게 대회개최년도 본회 이사정기총회에서 배포한다.

제 6 장 경기종목

제 31 조 경기종목

1 항, 미주체전의 경기종목대상은 하계종목을 대상으로 하여 본규정에 정하는 정식 종목과 체전본부위원회에서 정하는 시범경기로 규정한다.

2 항, 미주체전의 경기종목은 다음과 같이 결정규정하며 정식종목이다.

가) 정식종목 결정 및 추가, 취소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나) 정식종목은 종합채점에 포함되는 경기종목을 칭하며 경기형태 및 출전인원을 반영하여 채점비율을 조정한다.

다) 경기종목:

라) 체전개최지의 사정에 의거 불가피하게 정식종목중 경기포기를 하여야 할 때는 체전본부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마) 참가하는 개개인은 1 개이상의 종목에 참가할 수 있으나 매 대회마다 참가요강에 의거, 결정할 수 있다.

제 32 조 시범종목

- 1 항, 본회가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종목에 대하여 시범종목으로 운영할 수 있다.
- 2 항, 시범종목은 종합채점에 반영되지 않는 종목이나 메달은 수여된다.
- 3 항, 정식종목 중에서도 유년부, 소년부 활성화를 위하여 시범부별을 운영한다.
- 4 항, 시범종목 및 시범부의 참가신청은 각 지회에서 참가신청서를 제출한다.

제 33 조

- 1 항, 경기종목의 부별 종별은 참가요강에 의한다.
- 2 항, 성별과 연령별로 구분하여 부별로 구분한다.
 - 가) 성별로는 여자부나 남자부로 구분한다. 단 구기종목 및 단체종목에서 경우에 따라 혼성으로 출전할 수 있다. 여기서 체전본부위원회에서 허용하는 법칙에 따른다.
 - 나) 연령부는 본 규정과 참가신청서에서 명시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일반부: 17 세 이상으로 구분한다.
소년부: 16 세 이하로 구분한다.
유년부: 12 세 이하로 구분한다.
 - 다) 연령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기단체는 체전본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4 조 세부종목

- 1 항, 각 경기종목의 실시 세부종목은 참가요강에 의한다.
- 2 항, 체중 및 비거리에 의하여 세부종목으로 분류한다.
- 3 항, 각 경기 종목에서 경기형태에 의해 세부종목으로 구분한다.

제 35 조 종목채택 및 취소

경기종목의 부별, 종별 세부종목의 채택 및 취소는 체전본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7 장 경기운영 및 경기장

제 36 조 경기운영 및 방법

미주체전 모든 경기는 해당 중앙경기단체의 경기규칙에 의하여 본회의 미주체전 경기 운영내규에 따라 운영하며 경기는 본회지회 대상으로 한다.

제 37 조 경기운영방법

경기종목의 경기방법은 해당 중앙경기단체의 경기방법에 의하되 현실에 맞게 토너먼트 또는 리그전으로 운영하며 개인경기는 1 인경기를 말하며 개인경기단체전 및 단체경기종목의 단체구성은 제()조 참가요강에 의한다.

제 38 조 일정 및 대진추정

- 1 항, 종목별 경기일정은 중앙경기단체와 지역경기단체가 협의하여 조직위원회와 체전본부위원회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2 항, 모든 종목의 경기는 폐회식 2 시간전에 종료하여야 한다.
- 3 항, 대진은 각 종목 출전지회의 대표자 입회하에 추첨으로 결정한다.
- 4 항, 대진결정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체전본부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각 경기단체의 결정에 따를 수도 있다.

제 39 조 경기심판

각 종목별 심판선정은 중앙경기단체와 협의하여 대회 경기운영위원회에서 선발하고 운영한다.

- 1 항, 각 종목별로 심판진 중에 심판부장을 둔다.
- 2 항, 경기진행에 있어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담당한 주심이 이를 처리한다.
- 3 항, 주심의 판정에 대한 소청하는 단체경기종목의 심판부장이 이를 제거한다.
- 4 항, 해당경기종목이 심판부장의 판결에 대한 상소가 있거나 기타 판결되지 않은 심판판정에 대한 사항은 본부위원회 소청심의 위원회에서 처리한다.
- 5 항, 단체팀 또는 선수와 지역체육회와 관련이 있는 심판은 배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40 조 심판규정

- 1 항, 심판은 경기운영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
- 2 항, 심판은 경기장 밖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 경기에 지장을 초래될 때에는 경기를 중단하고 심판부장에게 보고한다. 모든 경기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
- 3 항, 심판은 다음과 같이 구분, 기록하여 경기종료와 동시에 종합상황실로 보고한다.
 1. 승패 및 득점 결과

2. 경고 받은자 명단
3. 퇴장 당한자 명단
4. 기타 모든 사안

4 항, 본부 종합상황실은 경기종료후 심판의 경기결과를 수집하여 그를 근거로 모든 경기상황을 기록, 보관한다.

5 항, 심판은 경기중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시에는 상황보고서를 경기운영본부에 즉시 보고한다.

6 항, 본회 상벌, 운영위원장은 상기보고서에서 본회규정 위반자 및 단체가 있을시 30 일이내에 상벌위원회를 소집한다.

제 41 조 부정(무자격)선수

1 항, 부정선수라 함은 참가신청서 포함되지 않은 선수를 말한다.

2 항, 구기종목에서 타민족 혹은 비장애인이 엔트리의 1/3 이상 초과할 경우를 말한다.단체경기의 경우 선수가 부족할 경우 체전본부 경기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출장할 수는 있다.

3 항, 무자격 선수의 출장이 확인되었을 경우 당해게임은 몰수패로 결정한다.

제 42 조 무자격(부정)선수 조치

1 항, 무자격선수가 소속된 지회는 사유서를 본회 체전본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항, 무자격선수출장의 횟수가 많은 지회에는 본부 소청상벌위원회에서 징계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

제 43 조 경기장시설 및 경기기구

대회조직위원회에서는 해당경기종목의 국제경기규칙 또는 중앙경기단체의 경기규칙에 의한 정규규격을 갖춘 경기장을 준비하여야하며 경기용 기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44 조 채점 및 순위결정

미주체전의 채점은 참가요강의 채점내규에 따라야 하며 참가신청 지회별 채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성적에 참가점수를 가산하도록 한다.

제 45 조 시상구분

- 1 항, 개인 및 단체 시상
- 2 항, 종합성적 시상
- 3 항, 경기종목별 종합 시상
- 4 항, 모범선수단 시상
- 5 항, 최우수 선수상

6 항, 격려상

7 항, 입장상

제 46 조 시상방법

1 항, 개인 및 단체시상. 1 위 금메달 2 위 은메달 3 위 동메달. 입상하지 못한 장애인 선수에게는 격려메달을 수여한다.

2 항, 종합성적 우승지회에서 재미대한장애인체육회장배준우승지회 준우승배 3 위에게는 준준우승배를 수여한다.

제 8 장 대회임원

제 47 조 대회임원

1 항, 대회임원은 본회 회장이 위촉하며 이 대회 기간중 활동한다.

2 항, 대회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대회장은 본회회장으로 한다.

나) 명예대회장은 대한장애인체육회장과 직전 재미대한장애인 체육회장으로 한다.

다) 부대회장은 재미대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으로 한다.

라) 대회고문은 본회고문으로 하고 명예고문을 둘 수가 있다.

마) 총괄본부장은 본회사무처장 총괄부분부장은 본회사무차장으로 한다.

바) 소청심의위원은 위원장에 체전본부위원장으로 위원에는 본회부회장, 사무처장 및 본부체전위원중에서 임명한다.

제 48 조 경기단체임원

개최지 지역경기단체 회장이 종목별 담당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지사정에 의한 본회가 정하는 부서에 따라 당해경기단체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 9 장 개회 및 폐회

제 49 조 초청 및 일정

1 항, 조직위원회는 개회식 초청인사를 사전에 본회와 합의하여 승인을 받으며 초청장은 대회장으로 임한다.

2 항, 개회식은 경기개시 전날 오후 6 시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변경은 체전본부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요하며 식전행사는 조직위원회 계획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3 항, 폐회식은 미주체전 최종일 경기종료후에 거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50 조 본부석 좌석배치

전면에는 재미대한장애인 체육회장을 중심으로 상부단체장과 조직위원장 및 기관단체장, 개최지지역 한인단체장 본부 부회장, 다음으로 지회장,중앙경기단체장으로 하고 그 외 관계자 순으로 한다.

제 51 조 공식행사식순

1 항, 개회식식순

- 가) 귀빈입장
- 나) 개회선언
- 다) 선수단입장
- 라) 국기에 대한 경례
- 마)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 바) 양국국가제창
- 사) 환영사(조직위원장)
- 아) 대회기 계양
- 자) 개회사(대회장)
- 차) 격려사(대한장애인체육회장)
- 카) 축사
- 타) 선수 및 심판선서
- 파) 성화점화
- 하) 안내광고
- (가) 대회개최선언
- (나) 선수단 퇴장

2 항, 폐회식 식순

- 가) 귀빈입장
- 나) 개회선언
- 다) 선수단입장
- 라) 국민의례
- 마) 성적발표
- 바) 종합시상
- 사) 축가

- 아) 폐회사(대회장)
- 자) 대회기 하강
- 차) 대회기 전달
- 카) 한송사(조직위원장)
- 타) 폐회선언

제 52 조 개,폐회식 운영계획

- 1 항, 조직위원회는 개회식(식전행사, 공식행사, 식후행사) 및 폐회식의 기본계획을 체전개최일 2 개월전에 체전본부위원회에 제출하며 세부행사계획서는 체전개최일 30 일전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항, 조직위원회가 개,폐회식 행사를 직접아니하고 대행업체로 하여금 행사를 대행하고자 할 경우 본회와 사전합의하의 승인을 받는다.

제 53 조 입장대행

- 1 항, 개회식시 입장식은 다음과 같은 순으로 한다.
 - 가) 전미주장애인체육회 표식판
 - 나) 성조기 및 태극기 재미대한장애인기, 개최지 주기
 - 다) 총 지휘자
 - 라) 미주체전기
 - 마) 중앙경기단체 기수단
 - 바) 참가지회 기수단
 - 사) 심판진
 - 아) 선수단입장
 - 맨 선두엔 차기 개최지 선수단을 선두로 참가지회 알파벳순으로 입장하고 맨 후에엔 개최지 선수단이 입장
- 2 항, 각종 표식판은 조직위원회가 책임제작하며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전미주장애인체육대회"는 3ft*15ft 이상의 크기로 제작한다.
 - 나) 태극기 및 성조기는 기수단용과 게양용으로 준비한다.
 - 다) 각지회명칭 표식판의 크기는 1ft*5ft 길이로 제작하며 중간에 핸들을 부착하여 땅에 세울 수 있도록 하며 기타 표식판 제작은 체전본부위원회와 사전협의 승인을 받는다.
 - 라) 각경기단체 및 지역체육회기는 기수단용으로 입장사용한다.
 - 마) 태극기, 성조기 앞에는 그 어느기로 입장할 수 있다.

제 54 조 선수단입장

- 1 항, 각지회 선수단 입장은 지회표식판, 지회기수, 단장, 부단장, 총감독, 선수단 순으로 한다.
- 2 항, 선수단 표식요원은 조직위원회가 채용(선발)하며 지회기수는 지회선수단 중 1 인으로 한다.
- 3 항, 선수단 입장 순서는 차기개최지가 첫번째로 입장하며 이후 알파벳 순서로 하여 개최지 선수단이 끝으로 입장한다.

제 55 조 대회개회선언

- 1 항, 장애인미주체전 개회선언은 개최지 한인회장이 한다.
- 2 항, “제 00 회 전미주한인장애인 체전의 개회를 선언합니다.”로 선언한다.

제 56 조 선수 및 심판대표 선서

- 1 항, 선수 및 심판대표는 참가선수와 심판을 대표하며 대회장에게 선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 2 항, 선수대표와 심판대표가 선서를 할때에 참가지회 기수단은 선서대를 반원으로 도열하여야 한다.
- 3 항, 선서내용

선수: “선서” 제 00 회 전미주한인장애인 체전에 참가한 선수일동은 대회규정을 준수하여 정정당당히 경기에 임할 것을 선서합니다.

선수대표 0 0 0

심판: “선서” 본인은 모든 심판을 대표하여 체육인의 정신으로 경기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심판대표 0 0 0

제 57 조 행사요원선정

공식행사요원 선수대표, 심판대표등 조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체전본부위원회 승인을 개최 2 주전에 받아야 한다.

제 58 조 폐회식 운영

- 1 항, 폐회식은 주경기장 최종경기가 종료된 직후에 한다.
- 2 항, 성적발표는 조직위원장이 한다.
- 3 항, 종합시상은 대회장, 조직위원장이 한다.
- 4 항, 대회기 하강은 승리에 관한 곡으로 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항, 하강대회기는 개최지 지회장에게 전달되어 대회장에게 반납되고 대회장은 이를 차기 미주체전 개최지 지회장에게 전달하여 보관케 한다.

6 항, 폐회선언은 체전본부위원장이 한다.

“제 00 회 전미주한인장애인 체전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제 59 조 광고물 및 현수막

대회기간중 설치되는 광고물 및 현수막은 조직위원회의 판단에 의해 설치되며 체전본부위원회와 사전조율을 하도록 한다.

제 10 장 소청 및 규정준수

제 60 조 소청심의위원회

장애인미주체전에 참가한 임원선수 및 참관단에 부정 및 불미스러운 사실이 있거나 소청 및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소청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처리한다.

제 61 조 규정준수의무

조직위원회등 전국대회를 준비하거나 운영하는 관련단체는 본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 62 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0 년 3 월 7 일 총회결정시부터 시행된다.